

의안번호	2204859
의 퇴 인	이철규 의원
회 답 일	2024. 12. 17.
추 계 번호	24A4471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원전수출 등(이하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원전산업지원 위원회)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는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8조(원전산업발전 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원전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및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인증·인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1조(공급망 안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연료, 원전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원전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전기업이나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등을 위하여 원전기업이나 원전수출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8	안 제13조(투자 활성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소형모듈원전, 원전수출, 원전산업 기자재 및 원전연료 공급망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등)	○ 정부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등)	○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증, 실증을 위한 원자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입주 예정 기업을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관리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8조(소형모듈원전의 활용 등)	○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 － 1. 소형모듈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소 생산 등에 활용 － 2. 소형모듈원전에서 발생한 열이나 증기를 산업 현장 등에 활용 － 3. 그 밖에 소형모듈원전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13	안 제19조(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등)	○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에 관한 국제동향조사,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소형모듈원전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0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5	안 제2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2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6조(실태조사)																
3	안 제7조(원전산업지원 위원회)																
4	안 제8조(원전산업발전 기금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가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제정안의 사업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8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head> <tbody>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td><td>1,00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td><td>53.3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td><td>1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td><td>2억원 (전력기금)</td></tr> </tbody>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5	안 제10조(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0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head> <tbody>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핵심기술개발(R&D)</td><td>13.6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td><td>18.07억원 (전력기금)</td></tr> </tbody>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	18.07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	18.07억원 (전력기금)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table> <tr> <td>소관</td><td>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d><td>2024예산</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 전기술실증사업(R&D)</td><td>10.49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td><td>63.65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td><td>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td><td>6.36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R&D)</td><td>297.2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td><td>332.8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td><td>6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 업 (R&D)</td><td>433.13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td><td>393.27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td><td>243.12억원 (방폐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 개발 (R&D)</td><td>15.99억원 (방폐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td><td>50.56억원 (방폐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 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td><td>36억원 (방폐기금)</td></tr>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 전기술실증사업(R&D)	10.49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63.65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R&D)	297.2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	332.8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6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 업 (R&D)	433.1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	393.27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243.12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 개발 (R&D)	15.99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	50.56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 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억원 (방폐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고리1호기기·설비활용원전안 전기술실증사업(R&D)	10.49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63.65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36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R&D)	297.2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	332.8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6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 업 (R&D)	433.13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	393.27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243.12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 개발 (R&D)	15.99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	50.56억원 (방폐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 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억원 (방폐기금)																																							
6	안 제11조(공급망 안정화)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 원전기업이나 원전수출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1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 사업은 다음과 같음																																							
7	안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8	안 제13조(투자 활성화 지원)																																								
9	안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등)	<table> <tr> <td>소관</td><td>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d><td>2024예산</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td><td>73억원 (기후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td><td>49억원 (전력기금)</td></tr>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0	안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가 소형모듈원전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16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11	안 제17조(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의 지정 등)										
12	안 제18조(소형모듈원전의 활용 등)										
13	안 제19조(소형모듈원전의 국제동향조사 및 정책개발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head> <tbody>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td><td>10억원 (전력기금)</td></tr>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td><td>2억원 (전력기금)</td></tr> </tbody>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14	안 제20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20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15	안 제2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16	안 제2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th><th>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th><th>2024예산</th></tr> </thead> <tbody> <tr> <td>산업통상 자원부</td><td>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td><td>84,6억원 (전력기금)</td></tr> </tbody> </table>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소관	현행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	2024예산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2. 상세 사유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안 제5조(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 제6조(실태조사), 안 제7조(원전산업지원위원회)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그 소요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참고로, 현재 「원자력 진흥법」 제16조¹⁾ 등에 따라 원자력산업실태조사(통계청 승

1) 「원자력 진흥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

인번호 105006)가 매년 수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관련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안 제8조(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의 경우 정부가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제정안의 사업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재량사업의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정안의 원전산업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및 안 제27조 등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함(안 제8조제3항)
- 제정안의 원전산업발전기금으로 추진될 사업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사업이 확대되면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로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먼저, 안 제10조(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안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등), 안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안 제20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사업이 확대되면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안 제21조(원전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안 제22조(원전수출사업자의 보조 및 융자) 등은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관련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참고로,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할 수 있다.

[표 1]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위: 백만원)

관련 규정	주요 사업	2024예산
안 제8조(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전력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원전기업 역량강화)	53.3억원 (전력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SMR 산업생태계 지원)	10억원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억원 (전력기금)
안 제10조(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13.6억원 (전력기금)
	원전산업 글로벌시장 맞춤형기술 개발사업(R&D)	18.07억원 (전력기금)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R&D)	10.49억원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R&D)	63.65억원 (전력기금)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36억원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심기술개발사업(R&D)	297.2억원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332.8억원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60억원 (전력기금)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R&D)	433.13억원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산업부)(R&D) * 과기부 예산은 409.33억원	393.27억원 (전력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243.12억원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R&D)	15.99억원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R&D)	50.56억원 (방폐기금)

관련 규정	주요 사업	2024예산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억원 (방폐기금)
안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등), 안 제16조(소형모듈원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에너지인력양성사업(원자력 분야, R&D)	73억원 (기후기금)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원전기업 인력양성, 비R&D)	49억원 (전력기금)
안 제20조(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84,6억원 (전력기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